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판결 번호: 01/2026/KDTM-ST

독립 - 자유 - 행복

선고일: 2026 년 01 월 30 일

사건명: 임대계약 분쟁,

금융대여계약 분쟁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명의로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

제 1 심 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판사): 황 꾸이 쓰우(Hoang Quy Suu)

인민참심원: 1. 딘 타인 하이(Dinh Thanh Hai)

2. 하 티 중(Ha Thi Dung)

서기: 디엵 투 쩡(Diep Thu Trang) -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 서기

검찰 참여자: 리 호아(Ly Hoa) - 타이응우옌성 인민검찰원 검사

2026 년 01 월 30 일,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에서, 2023 년 8 월 15 일자 접수번호 03/2023/TLST-KDTM 로 접수된 "임대계약 분쟁, 금융대여계약 분쟁"에 관한 상사·경영 사건에 대하여 제 1 심 공개재판을 진행하였다.

당사자 : 원고 KEXIM 베트남 유한책임 금융리스회사(KEXIM Vietnam Leasing Company Limited - KEXIM VLC) 주소: 베트남 호찌민시 사이공동 레주언 거리 34 번지, 다이아몬드 플라자 빌딩 9 층 907 호 법정대표자: 정현수(Jung HyunSoo) - 이사회 의장



위임대리인:딘 득 탄(Đinh Đức Thanh), 보 바 호안(Vo Ba Hoan), 응우옌 쾨 쩡(Nguyễn Quỳnh Trang) (위임장 번호: 02/2026/GUQ, 2026년 01월 16일).

출석 여부:딘 득 탄, 보 바 호안 출석, 응우옌 쾨 쩡 불출석

피고: Woltech Vietnam 유한책임회사주소: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타이응우옌시 푹주옌동 6 조 188 번지(현재 주소: 타이응우옌성 판딘푹동

32 조)법정대표자: 주영아(Ju Young Ah) – 대표이사

대표자 주소: 하노이시 탄쑤언동 레반티엠 거리 35 번지, 스텔라 가든 빌딩

4 층 VP17, 출석 여부: 불출석

피고의적법한 권리·이익 보호인 : 변호사: 당 꾸이 띠엔(Dang Quy Tien)소속:

Nation & Citizen 유한책임 법무법인(하노이시 변호사회)출석 여부: 출석

이해관계인:

1. Woltech Korea Co., Ltd.본점 주소: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56, 319 대표자: 안상호(AN SANGHO) – 대표이사, 출석 여부: 불출석

2. 하 반 흐엉(Ha Văn Hương)출생연도: 1976 년, 주소: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동히현 바이 마을, 출석 여부: 불출석

## 사건의 내용

원고인 KEXIM 베트남 유한책임 금융리스회사(이하 “KEXIM 베트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였다.

2019년 12월 13일, KEXIM 베트남과 Woltech Vietnam 유한책임회사(이하

“Woltech 베트남”이라 한다)는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을

체결하였다.본 계약은 KEXIM 베트남의 인가된 사업 범위 및 Woltech



베트남의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이다.금융리스 대상 자산은 텡스텐(Vonfram) 가공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1 대로서,신품이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또한 2019 년 12 월 13 일, 상기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에 근거하여 KEXIM 베트남, Woltech 베트남 및 OCTO MET HK CO., LTD(이하 “OCTO”라 한다)는 금융리스 자산의 수입을 목적으로 매매계약 번호 K2019040-SC 을 체결하였다. 2019 년 12 월 17 일, KEXIM 베트남은 Woltech 베트남의 금융리스 자산 구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 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호찌민시 지점을 통하여 OCTO 에게 미화 730,718 달러(USD)를 지급(대출 실행)하였다.

그러나 대금 지급 이후, OCTO 는 Woltech 베트남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 인도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KEXIM 베트남은 OCTO 가 금융리스 자산 인도를 지연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2020 년 11 월 20 일 및 2020 년 12 월 08 일, 총 두 차례에 걸쳐자산 인도 지연에 관한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OCTO 는 여전히 자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KEXIM 베트남은 OCTO 로부터 금융리스 자산을 구매하기 위한잔여 금액의 지급(추가 대출 실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2014 년 5 월 7 일자 정부령 제 39/2014/ND-CP(개정·보완된 규정) 및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의 규정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Woltech 베트남은 원금 상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2019 년 12 월 13 일자 매매계약 번호 K2019040-SC 에 따라 KEXIM 베트남이 이미 지급(대출 실행)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Woltech 베트남은 2020년 01월 15일부터 2022년 06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하여 KEXIM 베트남에게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 총액은 미화 44,706.03 달러(USD)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미화 0 달러(USD) 이자: 미화 44,702.34 달러(USD)

연체이자: 미화 3.69 달러(USD)

제 30/2015/TT-NHNN (개정·보완된 규정) 제 35조 제 3항 및 제 4항,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의 제 6조, 제 7조 및 별표 4 제 24조 제 24.2항(일반 약관)에 근거하여, Woltech 베트남은 2026년 01월 30일 기준 다음 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730,718.00 USD; 기한 내 미지급 이자 (대출 실행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 23,369.84 USD;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2022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금융리스 기한 내 이자율의 150% 적용): 230,852.16 USD =  $[730,718.00 \text{ USD} \times (3.56529\% + 2.7\%) \times 150\% \times 1,227 \text{ 일} / 365]$ .

지연 지급된 이자에 대한 이자 (기한 내 미지급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율은 금융리스 기한 내 이자율의 150%이나 연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2022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산정되고, 기존의 연체 리스 이자에 대한 이자 177.64 USD 포함): 7,560.76 USD =  $[23,369.84 \text{ USD} \times (3.56529\% + 2.7\%) \times 150\% \times 1,227 \text{ 일} / 365] + 177.64 \text{ USD}$ .

여기서 1,227 일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된다.

자금대여계약 번호 W3019065에 관하여:

2019 년 12 월 20 일, KEXIM 베트남과 Woltech 베트남은 자금대여계약 번호 W3019065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EXIM 베트남은 2019 년 12 월 20 일, 한국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호찌민시 지점을 통하여 Woltech 베트남에게 미화 500,000 달러(USD)를 대출 실행하였다.

해당 대출금의 목적은 금융리스 자산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전자금 보충이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KEXIM 베트남은 Woltech 베트남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기한을 재조정하고 상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Woltech 베트남은 2020 년 01 월 15 일부터 2022 년 06 월 16 일까지 KEXIM 베트남에게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미화 22,026.02 달러(USD)에 불과하다.

그 이후 Woltech 베트남은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KEXIM 베트남과의 연락 또한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022 년 09 월 21 일, KEXIM 베트남은 Woltech 베트남에게 위반 통지서(채무 불이행 통지)를 발송하여,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940 및 자금대여계약 번호 W3019065 에 따른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KEXIM 베트남이 위반 통지 및 상환 요구를 한 이후, Woltech 베트남은 어떠한 추가 지급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6 년 01 월 30 일 기준, Woltech 베트남이 자금대여계약 번호 W3019065 에 따라 KEXIM 베트남에게 지급한 채무 총액은 미화 22,026.02 달러(USD)에 불과하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미화 0 달러(USD) 이자: 미화 22,024.41 달러(USD) 연체이자: 미화 1.61 달러(USD)

2016년 12월 30일 자 중앙은행 회람 제 39/2016/TT-NHNN 제 13조 제 4항, 자금대여계약 번호 W3019065의 제 4조 제 4.1항, 제 1조 제 1.1항 (i)호, 제 1조 제 1.1항 (k)호, 제 4조 제 4.3항, 제 11조 제 11.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Woltech 베트남은 다음 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금: 미화 500,000.00 달러(USD)

기한 내 미지급 이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2022년 09월 21일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

미화 15,873.68 달러(USD)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2022년 09월 21일부터 2026년 01월 30일까지, 기한 내 금융대여 이자율의 150% 적용): 미화 156,394.57 달러(USD)  $500,000.00 \text{ USD} \times (3.56529\% + 2.4\%) \times 1,227 \text{ 일} / 365$   $500,000.00 \text{ USD} \times (3.56529\% + 2.4\%) \times 1,227 \text{ 일} / 365 + 5,995.71 \text{ USD}$

지연 지급된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기한 내 미지급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율은 기한 내 금융대여 이자율의 150%로 하되 연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2022년 09월 21일부터 2026년 01월 30일까지 산정하고, 기존 지연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 123.66 달러 포함):

미화 4,898.43 달러(USD) =  $15,873.68 \text{ USD} \times (3.56529\% + 2.4\%) \times 1,227 \text{ 일} / 365 + 123.66 \text{ USD}$ .

1,227 일은 2022년 09월 21일부터 2026년 01월 30일까지의 기간임.



KEXIM 베트남은 법원에 대하여 Woltech 베트남이 2026년 01월 30일 기준, 미화 총 1,669,667.44 달러(USD)를 KEXIM 베트남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 금액은 원금, 기한 내 이자 및 미지급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2026년 01월 30일자 신한베트남은행(Shinhan Bank Vietnam, 단일회원 유한책임은행)의

미국 달러(USD) 매도 환율 1 USD = 26,170 VND 를 적용할 경우, 총 43,695,196,643 베트남동(VND)에 해당한다.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약 번호	원금 (USD)	기한 내 이자 (USD)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USD)	지연 지급된 이자에 대한 이자 (USD)	합계 (USD)
<b>K20190940</b>	730,718.00	23,369.84	230,852.16	7,560.76	992,500.76
<b>W3019065</b>	500,000.00	15,873.68	156,394.57	4,898.43	677,166.68
<b>합계</b>	<b>1,230,718.00</b>	<b>39,243.52</b>	<b>387,246.73</b>	<b>12,459.19</b>	<b>1,669,667.44</b>

피고인 유한책임회사 Woltech Viet Nam 은 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 적법하게 소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인 Kexim Viet Nam 의 소 제기에 대하여 진술이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이해관계인 WOLTECH KOREA CO., LTD(이하 “Woltech Hàn Quốc”)는 베트남 법무부를 통해 소송 서류 및 증거 수집 관련 문서의 송달을

위탁받았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Woltech Hàn Quốc 은 Kexim Viet Nam 의 소 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입장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이해관계인 하반흐엉(Ha Van Huong)은 2025 년 12 월 10 일자 해명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22 년 8 월 11 일, Woltech Han Quoc 의 법정대표자인 안상호(An Sang Ho)는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 기획투자국 기업등록과가 2019 년 11 월 12 일 최초 발급한 기업등록증(기업등록번호: 4601547725)에 따라 설립된 Woltech Viet Nam 의 출자지분 전부(자본금의 100%에 해당하는 208,260,000,000 동)를 하반흐엉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 년 8 월 11 일자 지분양도 합의서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가 하반흐엉으로 변경된 기업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 및 차입금에 대하여는 양도인(A 측)이 지급 및 이행 책임을 진다 ...”. 그러나 A 측이 양도 이전 발생한 채무를 조직, 기업 또는 개인에게 변제하지 않아 2022 년 11 월 8 일자 지분양도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2 년 10 월 26 일 체결된 지분양도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하반흐엉을 회사 대표로 변경하는 절차 또한 취소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현재 양측 간 체결된 각종 합의 문서 및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하반흐엉은 Woltech Viet Nam 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2025 년 9 월 8 일, 하반흐엉은 주영아(Ju Young Ah)를 Woltech Viet Nam 의 법정대표자로 지정하여 회사 소유자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하반흐엉은 다음의 서류를 해명 공문에 첨부하였습니다: 2025년 9월 8일자 주영아에 대한 위임장; 2022년 10월 26일자 지분양도계약; 2022년 10월 26일자 계약청산서; 2022년 10월 26일자 계약취소 문서.

피고 Woltech Viet Nam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Woltech Viet Nam 은 Kexim Viet Nam 이 주장한 바와 같이 500,000 달러를 차입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채무, 보증서의 내용, Woltech Hàn Quốc 이 Woltech Viet Nam 에서 보유한 지분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Woltech Hàn Quốc 이 태국응우옌성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일시불로 납부한 24,062,400,000 동의 토지임대료는 Woltech Viet Nam 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이는 Woltech Viet Nam 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Woltech Viet Nam 은 해당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타이응우옌성 인민검찰원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장 판사, 재판부 및 원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관련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해결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소 제기를 인용하여 피고 Woltech Viet Nam 과 한국 Woltech 에게 연대하여 두 건의 금융리스 계약 및 금융대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금, 기한 내 이자, 기한 내 이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1심 판결 시점까지 베트남 Kexim 에 지급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9  




또한 베트남 Woltech 과 한국 Woltech 은 1 심 판결 이후 완제 시까지, 계약에서 합의된 이자율에 따라 기한 내 이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계속하여 Kexim Viet Nam 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Woltech 및 한국 Woltech 가 상기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KEXIM 베트남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한국 Woltech 가 베트남 Woltech 에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담보자산으로 하여 관할 기관에 담보자산의 처분(압류, 경매 또는 매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타이응우옌(Thái Nguyên)성 인민법원이 2023 년 8 월 15 일자로 발령한 임시긴급조치 적용 결정 제 02/20 23/QĐ-BPKCTT 호를 계속 유지하여, 2019 년 7 월 11 일 베트남 Woltech 이 타이응우옌성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납부한 24,062,400,000 동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자산을 계속하여 동결합니다.

### **법원의 판단:**

*소송절차에 관하여:*

[1] 원고의 소 제기 내용 및 관련 권리·의무자들의 진술 의견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사건의 법 관계는 민사소송법 제 30 조 제 4 항에 따른 “금융리스계약 및 금융대출계약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2015 년 민사소송법 제 37 조 및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2] 월텍 베트남 유한책임회사(Woltech Vietnam Co., Ltd.)는 타이응우옌성 기획투자국으로부터 기업등록증 번호 4601547725 를 교부받았으며, 최초 등록일은 2019 년 11 월 12 일, 제 3 차 변경 등록일은 2022 년 11 월 3 일이다.



본점 주소는 타이응우옌성 타이응우옌시 뚝주옌(Túc Duyên)동 6 조 188 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타이응우옌성 판딘퐁(Phan Dinh Phung)동 32 조로 변경되었다.

법정대표자는 쥬 영 아(Ju Young Ah)이며, 직위는 대표이사(사장)이다.

2019 년 12 월 20 일 체결된 대출계약 번호 W3019065 및 2019 년 12 월 13 일 체결된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에 따르면, Kexim 베트남과 Woltech 베트남 간 계약서상 Woltech 베트남의 본점 주소는 타이응우옌성 송공시(Song Cong) 편광(Tan Quang)면 송공 2 산업단지 CN-4, 현재는 타이응우옌성 박광(Bach Quang)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상기 등록된 본점 주소 및 계약 체결 당시 주소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 및 소송서류 송달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회사의 사무실이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 공시송달(게시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2025 년 9 월 8 일, 하반허엉(Ha Van Huong) 씨는 쥬 영 아(Ju Young Ah)를 Woltech 베트남의 법정대표자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타이응우옌 지역 제 2 인민법원에서 계류 중인 Sang A Architects & Partner 회사와의 분쟁 사건에서, Woltech 베트남은 법정대표자인 쥬 영 아 명의로 2025 년 8 월 7 일 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쩌 티 투 타오(Tran Thi Thu Thao)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다.

해당 진술서 및 위임장에 기재된 Woltech 베트남의 주소 역시 타이응우옌성 타이응우옌시 뚝주옌동 6 조 188 번지(현재: 판딘퐁동 32 조)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월텍 코리아 주식회사(Woltech Korea Co., Ltd.)의 주소는 2019년 12월 20일자 보증서, 담보권 설정 등록 신청서, 및 월텍 코리아와 Kexim 베트남 간 체결된 질권(담보)계약서에 모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56, 319 번지.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은 2023년 10월 5일자 01/TTTPKDTM-TA55 호 공문을 발행하여 베트남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대한민국 관할 기관으로 사법위탁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3년 11월 10일, 베트남 법무부는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의 사법공조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공한을 발송하였다.

2024년 3월 19일, 베트남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원행정처로부터 회신된 사법공조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고가 제공한 주소에 따라 월텍 코리아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2024년 7월 24일,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은 01/TTTPKDTM-TA55 호 공문(2차)을 발행하여, 원고가 제공한 새로운 주소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 기관에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사법공조를 다시 요청하였다. 2023년 9월 18일, 베트남 법무부는 해당 사법공조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 공한을 발송하였다. 2025년 12월 17일, 베트남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의 사법공조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사법공조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은 2025년 10월 22일자 1470/TA-TDS 호 공문을 발행하여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및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에 송부하고,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전자정보포털 및 인민법원 전자정보포털에 본 소송의 제기 내용, 증거 공개 및 조정 회의 일정, 제 1차 및 제 2차 변론기일을



민사소송법 제 474 조 제 3 항에 따라 공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5 년 12 월 16 일,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은 타이응우옌성 인민법원에 전문을 송부하여, 1470/TA-TDS 호 공문을 주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전자정보포털에 30 일간 공시 및 게시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대법원 판사회의가 2017 년 5 월 5 일 공포한 결의 제 04/2017/NQ-HĐTP 호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서면 거래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에 따라 피고 및 관련 권리·의무자의 거주지, 근무지 또는 본점 주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한 경우, 이는 “거주지, 근무지 또는 본점 주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 또는 관련 권리·의무자가 거래 또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거주지, 근무지 또는 본점 주소를 변경하면서도, 2015 년 민법 제 40 조 제 3 항 및 제 277 조 제 2 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주소를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제 2 항 (b)호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피고 월텍 베트남 및 관련 권리·의무자 월텍 코리아의 불출석 상태에서 본 사건을 심리·판결하기로 결정한다.

본안에 대하여:

2019 년 12 월 13 일자 금융리스 계약번호 K2019040 에 관하여(케심

베트남(Kexim Vietnam) 과 월텍 베트남(Woltech Vietnam) 간):

[5] 2019 년 9 월 13 일, Kexim 베트남과 월텍 베트남(Woltech Vietnam Co., Ltd.)은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을 체결하였다.리스 대상 자산은

텅스텐(Wolfram) 가공 제품 생산용 기계설비로서, 자산 가액은 미화 1,461,176 달러이다.리스 기간은 최초 자금 집행일로부터 최종 자금 집행일 + 60 개월로 하되, 12 개월의 거치기간을 포함한다.적용 이자율은 LIBOR(3 개월물) + 연 2.7%이며, 연체이자는 정상 이자율의 150%로 한다.

2019 년 12 월 17 일, Kexim 베트남은 산업은행(Industrial Bank of Korea) 호치민시 지점을 통하여 Oct Met HK., Ltd.(월텍 베트남에 기계·설비를 매도하는 자산 판매자)에게 미화 730,718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는 2019 년 12 월 13 일자 매매계약 번호 K2019040-SC 에 따른 자산 구매 대금의 일부 지급이다.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년 12 월 13 일자 월텍 코리아가 발행한 보증서 및 월텍 코리아가 보유한 월텍 베트남 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금액: 208,260,000,000 베트남동)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2021 년 5 월 6 일 호치민시 소재 자산거래등록센터에 의해 담보권 설정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었다.

[6]계약 이행 과정에서, 자산 판매자인 Oct Met HK., Ltd.는 2019 년 12 월 13 일 체결된 매매계약 번호 K2019040-SC 에 따라 월텍 베트남에 자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상기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기관으로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산하 국제중재센터를 합의하였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상의 분쟁은 본 사건에서 법원의 심리 및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2019 년 12 월 13 일 체결된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제 14 조 제 14.5 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 계약에 따라 리스 자산의 구매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경우, 해당 리스 자산은 임차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계약 제 14 조 제 14.7 항에 따르면, “계약 제 10.2 조에 따라 예정된 자산 인도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어떠한 사유로든 리스 자산이 수입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본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정부가 2014 년 5 월 7 일 공포한 금융회사 및 금융리스회사 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 39/2014/ND-CP 호 제 18 조 제 4 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공급자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리스 자산이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인도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에 따라, 원고 Kexim 베트남이 2019 년 9 월 13 일 체결된 금융리스계약 번호 K2019040 에 근거하여 금융리스계약의 해지를 구하고, 피고 월텍 베트남에게 해당 계약에 따라 이미 집행된 원금 미화 730,718 달러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이자에 관하여:*

[8] 2019 년 12 월 13 일 체결된 리스계약 번호 K2019040 및 그 수정합의에 따라, 원고 Kexim 베트남이 피고에게 원금에 대한 정상 이자, 정상 이자에 대한 이자, 그리고 2022 년 9 월 21 일 연체로 전환된 시점부터 2026 년 1 월 30 일 제 1 심 선고일까지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및 제 1 심 선고일 이후부터 전액 변제 시까지 계약에서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인용할 근거가 있다.

